#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18-235호

안 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3. 11. 8.

#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 가.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실태를 점검하여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이 유

####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ㅇㅇㅇ에 소속된 공공기관으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sup>1)</sup>」(이하 '舊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 피심인의 일반현황 >

|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주소 |
|----------|--------|----|
|          |        |    |

# Ⅱ.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2.10.27.)가 접수되어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22.12.21. ~ '23.5.4.)를 실시하였으며, 피심인의 舊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sup>1)</sup>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2. 행위 사실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피심인은 '22년도 ㅇㅇㅇㅇ ㅇㅇㅇ 합격자 발표자료를 '22.10.26. 기준 아래와 같이 수집·보관하고 있다.

#### < 개인정보 수집 현황 >

| 구분     | 항목                   | 수집일                      | 건수(건)  |
|--------|----------------------|--------------------------|--------|
| ㅇㅇㅇㅇ자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ㅇㅇㅇ | '22.3.2.<br>~ '22.10.26. | 4,562건 |

###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 1) 유출항목 및 규모

ㅇㅇㅇㅇ ㅇㅇㅇ 선발결과 발표 관련 ㅇㅇㅇ 4,56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권역, ㅇㅇㅇ, 수험번호, 선발결과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유출 인지 및 대응

| 일시    |  | 주요 내용   |  |  |  |
|-------|--|---|--|--|--|
|       | 10.26.<br>(21:40)  | 합격자 발표자료 인터넷 유포 상황 제보로 <b>유출 인지</b>           |  |  |  |
|       | 10.26.<br>(22:06)  | 홈페이지 선발결과 팝업창 링크 및 파일 삭제                      |  |  |  |
| 2022. | 10. 26.<br>(23:30)   | 해당 커뮤니티에 삭제 요청하여 커뮤니티 게시글 삭제                  |  |  |  |
|       | 10.27.   | 개인정보 <b>유출신고</b> , <b>유출통지(문자)</b>            |  |  |  |
|       | 3.27.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하달, 합격자 발표 방법을 P<br>(수험번호, 비식별 처리된 이름(홍*길)) 형태로 변경 |   |  |  |  |
| 2023  | 5월   | ㅇㅇㅇ시스템에 ㅇㅇㅇㅇ 선발 및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br>개발 완료 |  |  |  |

#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ㅇㅇㅇㅇ ㅇㅇㅇ 합격자 발표를 위해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자료 엑셀파일을 게시하였으며, 합격자 발표를 위한 엑셀파일은 합격 여부 조회 대상이 되는 전체 응시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격여부가 포함된 시트와 합격여부를 조회하는 시트로 작성하였다.

피심인은 조회 대상이 되는 시트는 숨기기를 한 후 '문서보호' 암호를 설정하여 홈페이지 팝업창에 '합격자 발표자료'를 게시하고, ㅇㅇㅇㅇ 응시생은 합격 여부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자료'를 다운 로드하여 조회하는 시트에서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성명을 입력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신원 미상의 자가 '합격자 발표자료'의 '문서보호' 암호를 해제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ㅇㅇㅇㅇㅇㅇㅇ ㅇㅇ이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합격자 발표 팝업창 화면 | '합격자 발표자료' 엑셀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년도 ㅇㅇㅇㅇ ㅇㅇㅇ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합격자 발표자료'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ㅇㅇㅇㅇㅇㅇㅇㅇ들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유출된 사실이 있다.

####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5. 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5.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였다."며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Ⅲ. 위법성 판단

#### 1.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가. 관련 법 규정

舊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이하'舊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3)」(이하 '舊고시') 제6조 제 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sup>2)</sup>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sup>3)</sup>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시행

####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 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ㅇ 합격자 발표에 수험번호 등 대체 가능한수단이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합격자 발표자료(암호화된 엑셀파일\*)에 포함시켰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함으로써미상의 자(해커)에 의해 암호화가 해제되어 ㅇㅇㅇ 4,562명의 개인정보가공중에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舊시행령제30조제1항, 舊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 숨김처리 및 통합문서보호 형태로 암호화였으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암호화 해제

#### Ⅳ. 처분 및 결정

###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같은 법 舊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 「舊 주민등록번호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4)」(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舊보호법 舊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은 고의·중과실·경과실 여부 및 유출 주민등록번호 규모에 따라 산정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경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로서, '일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을 적용한다.

<sup>4)</sup>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10. 20. 시행

| <舊보호법 | 시행령 | 제40조의2 | [별표 | 1의3] | > |
|-------|-----|--------|-----|------|---|
|-------|-----|--------|-----|------|---|

| 위반 정도          | 산정 기준액   | 비고   |
|----------------|----------|--|
| 매우 중대한<br>위반행위 | 3억 5천만 원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br>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 등'이라 한다)된 경우            |
| 중대한<br>위반행위    | 2억 3천만 원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br>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
| 일반 위반행위        | 1억 원     | 경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

### 나. 1차 조정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는 "1차 조정금액은 산정기준액에 따라 <1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1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1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위반행위는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2점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 기준표>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5,000만 원을 감경한다.

#### < 세부평가 기준표 >

|                  | <del>부</del><br>고려사항 | <u>과점수</u><br>비중 | 3점  | 2점   | 1점                       |  |  |
|------------------|----------------------|------------------|---|--|--------------------------|--|--|
| 안                | 개인정보에<br>대한 접근       | 0.2              |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하지 아                          |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 중 한 가지를 하지<br>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실하게 한<br>경우<br>1 접근통제<br>2 접근권한의 관리 | 3점 또는 2점에 해당<br>되지 않는 경우 |  |  |
| 전<br>성<br>확<br>1 | 암호화                  | 0.2              | 주민등록번호의 송신·전달·저장<br>시 이를 암호화 하지 아니한<br>경우 | [한 기념증으로 하으하면서 하증]   | 3점 또는 2점에 해당<br>되지 않는 경우 |  |  |
| 보<br>조<br>치      | 보안<br>프로그램           | 0.2              | 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br>실시하지 아니하여 최신의 상태로<br>유지하지 않은 경우                                | 3점 또는 2점에 해당<br>되지 않는 경우 |  |  |
|                  | 접속기록의<br>보관 등        | 0.2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br>보관 및 위조·변조 등 방지를<br>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 3점 또는 2점에 해당<br>되지 않는 경우 |  |  |

|                  |     |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물<br>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지<br>아니하거나 잠금장치를 하지<br>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물리적 보<br>관장소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br>물리적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                   |              |
|------------------|-----|--|---|--------------|
| 피해 방지<br>후속 조치 등 | 0.2 |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br>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br>각 호의 조치 사항 중 두 가지<br>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점 또는 2점에 해당 |

#### < 1차 조정 기준표 >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 1차 조정 비율  |
|--------------------|-----------|
| 2.5이상              | +100분의 50 |
| 2.3이상 2.5미만        | +100분의 35 |
| 2.1이상 2.3미만        | +100분의 20 |
| 1.9이상 2.1미만        | -         |
| 1.7이상 1.9미만        | -100분의 20 |
| 1.5이상 1.7미만        | -100분의 35 |
| 1.5미만              | -100분의 50 |

#### 다. 2차 조정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는 "2차 조정금액은 1차 조정된 금액에 <2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2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2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위반행위는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2점에 해당하므로, <2차 조정 기준표>에 따라 1차 조정된 금액의 50%인 2,500만 원을 감액한다.

# < 세부평가 기준표 >

| <del>부고</del><br>고려사항 | <u>사점수</u><br>비중 | 3              | 3점   |                 | 2점 |    |  |          | 1점  |      |
|-----------------------|------------------|----------------|------|-----------------|----|----|--|----------|-----|------|
| 위반기간                  | (1')             | 위반기간이<br>하는 경우 | 6개월을 | 위반기간이<br>이내인 경우 |    | 초과 |  | 또는<br>경우 | 2점에 | 해당되지 |

| 위반횟수                 | 0.2 | 최근 3년 내 주민등록번호<br>유출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br>2회 이상 받은 경우 | 축로 과장금 보과 처부의 1회  |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br>않는 경우 |
|----------------------|-----|---|---|-------------------------|
| 조사협조                 | 0.2 | 내 자료 미제출, 조사자료<br>은폐 등 조사방해의 부당성                |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기간내<br>자료 미제출, 조사자료 은폐<br>등 조사방해의 부당성이 경미<br>하지 않은 경우   |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
| 2차 피해                | 0.2 | 위반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br>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br>등 2차 피해 발생할 우려가 상<br>당히 큰 경우                     |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br>않는 경우 |
| 개인정보<br>보호를<br>위한 노력 | 0.2 |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원교육<br>을 하거나 표창을 받는 등 개<br>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상<br>당히 있는 경우* | 해당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

\* 각 부서에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안내, 부서 별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정보시스템에 ㅇㅇㅇㅇ 선발 및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완료

#### < 2차 조정 기준표 >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 2차 조정 비율  |
|--------------------|-----------|
| 2.5이상              | +100분의 50 |
| 2.1이상 2.5미만        | +100분의 25 |
| 1.7이상 2.1미만        | -         |
| 1.3이상 1.7미만        | -100분의 25 |
| 1.3미만              | -100분의 50 |

#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2항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제2호),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 2차 조정된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담당 직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호법상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4,562건이 유출된 것으로서 과징금 면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유출에 따른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유출된 점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비경제적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금액의 50%인 1,250만 원을 감경한다.

# 마. 최종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1차·2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거쳐 총 1,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 과징금 산출내역 >

| 기준금액                            | 1차 조정                                    | 2차 조정                                    | 부과 과징금 결정                                     | 최종 과징금   |
|---------------------------------|--|--|---|----------|
| 1억원                             | 5,000만 원                                 | 2,500만 원                                 | 1,250만 원                                      |          |
| 일반 위반행위<br>※ 주민등록번호<br>10만 건 미만 | 1차 산정점수<br>1.2점<br>⇒ 50%(5,000만 원)<br>감경 | 2차 산정점수<br>1.2점<br>⇒ 50%(2,500만 원)<br>감경 | 2차 조정금액이<br>과중하다고 인정<br>⇒ 50%(1,250만 원)<br>감경 | 1,250만 원 |

#### 2. 과태료 미부과

舊보호법 제76조는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 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 제2항제6호, 같은 법 舊시행령 제63조의 [별표2]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 舊보호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3. 개선권고

피심인에 대하여 舊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 한다.

- 가.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실태를 점검하여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처분 결과의 공표

舊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11.18. 시행)」제2조(공표요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2.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훼손한 행위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제5조(공표기간) 보호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경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br>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               |                     |               |   |  |  |
|--|--------------|---------------|---------------------|---------------|---|--|--|
| 순번   | 위반행위를<br>한 자 | 위반행위의 내용      |                     |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   |  |  |
|  | 명칭           | 위반조항          | 위반내용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  |
| 1  | ㅇㅇㅇ학교        | 법 제24조<br>제3항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br>제한 위반 | 2023 11 8.    | 개선권고<br>(주민등록번호 처리<br>보호실태 개선 및<br>교육 실시) |  |  |
|  |              | 법 제29조        | 안전조치 의무 위반          |               |   |  |  |
| 2023년 11월 8일<br>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              |               |                     |               |   |  |  |

# V. 결론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2제1항, 제61조제2항,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